

2023년도 제2회 별정우체국 직원(집배원) 채용시험 공고

부산지방우정청 주관 2023년도 제2회 별정우체국 직원(집배원)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0일

부산지방우정청장

1.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- 채용직급 : 별정우체국 집배원(집배9급)
- 채용인원 : 8명

총괄국명	별정국명	선발인원	채용직급	임용시기	주요직무
남울산	울산청량	1명	집배원 (집배9급)	최종합격자 서류 검증 및 이상유무 확인 후	- 우편물의 배달·수집 - 우정사업 마케팅 활동 업무 등
김해	김해진례	1명			
	김해주촌	1명			
부산강서	부산강동동	1명			
고성	고성대가	1명			
밀양	밀양청도	1명			
산청	산청금서	1명			
함안	함안대산	1명			

※ 중복 접수 불가(1개 별정우체국에만 응시 가능)

2. 근로 조건

- 신 분 :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되며, 신분은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국가공무원이 아님
- 보수수준 :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에 따라 책정되며, 초임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초임과 비슷한 수준

3. 응시 자격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74조 정년(60세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(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)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 (2005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남도 거주자
-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(‘필수1’ 과 ‘필수2’ 모두 충족)
 - (필수1)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
 - (필수2)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
- *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

4. 시험 방법

- (1차 시험 : 서류전형)
 -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 지 심사
 - *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
 - * 서류전형기준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우대요건 등
- ※ 우대요건 세부사항(적극적 서류전형에 한함)
 - ☞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

관련분야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○ 우편물 배달, 수집 또는 소포(민간택배 포함)* 업무 * 소포업무 인정기준 ① 소형의 ② 다양한 물품을 ③ 발송인(수탁자)과 택배업자가 일정한 계약(접수)을 통해 ④ 운송 등을 위해 포장을 하고 ⑤ 부착된 운송장(기표지)에 기재된 장소에서 ⑥ 다수의 수취인(수하인)에게 인도하는 행위 - 소포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, 퀵서비스, 대형마트 주문-배송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경력 불인정 ○ 우체국에서 근무한 우체국소포원·특수지집배원 경력 및 舊재택위탁배달원의 '20년 이전 경력은 우정직(집배) 업무와 유사한 경력으로 50%만 적용된 환산경력으로 인정함(근거: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기준)
無음주운전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자 *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(감점식)
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류관리사, 유통관리사 1급, 자동차정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

○ (2차 시험 : 면접시험) * 1차 시험 합격자 대상

-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다음 각 호에 관한 이해도를 구술로 평가하여 결정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(우편 및 금융상식 포함)과 그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| |

5. 응시서류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3. 4. 19.(수) ~ 4. 21.(금), 9:00 ~ 18:00

○ 접수처 :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(☎ 051-559-3238)

※ 주소 : (47502)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(거제동) 8층

○ 접수방법 : 지정된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

※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. (반드시 **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**)

※ 봉투 겉면에 『별정우체국 직원(집배원) 응시원서 재중』 표시

※ 방문접수는 평일 09시~18시 중 가능(단, 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)

※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(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폰 SMS 발송)

6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
구 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일 자	2023. 4. 28.(금)	2023. 5. 10.(수)	2023. 5. 15.(월)

※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bs/>)의 채용공고란에 게시

※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

※ 상기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7. 제출서류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,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)

- 응시원서 (5,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) 1부 **【붙임1】**
 - * 저소득층 해당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는 응시수수료 면제 (반드시 증빙서류 제출)
 - *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
-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각1부(워드작성가능)**【붙임2~4】**
-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
 - * 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
→ 초본 교부 신청 시 신청내용을 「**전체포함**」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것
 - *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(남자만)
- 운전경력증명서 1부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
 - * 면허취득일 이후 **전체 운전경력** 현황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
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
 - * 서류 제출시 면허 시험 응시 중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(응시표) 제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**【붙임5~6】**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- ※ 기관·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기관의 증명이 있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
- **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**,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(양면인쇄, 모아찍기 불가)
- 제출서류의 양식은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여 제출

8. 후보자의 채용

- 채용예정 시기 : 최종합격자 서류 검증 및 이상유무 확인 후
-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와 해당 우체국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

9. 기타 사항

-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bs/>)에 변경 공고합니다.
-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(결격사유)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 중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.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-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(1회한)
-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(휴대폰, 이메일 등)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집배 응시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.
-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해 필요할 경우 근무일을 월~금 또는 화~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(☎ 051-559-323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0. 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명		근무예정부서
해당 응시우체국		응시우체국 배달 및 소포업무 부서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편물 배달 및 수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편 차량, 원동기장치 운전 - 관할 지역 우편물 구분·수집·배달 -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자료 전산 등록 및 처리 -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부대업무 ○ 우정사업 마케팅 활동 등 	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 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무 역량) 안전의식 실천능력, 성실한 업무처리능력,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, 고객(민원) 응대능력 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량 및 원동기장치 운행 관련 지식 ○ 사고예방 및 교통법규 관련 지식 ○ 집배관련 시스템, PDA 장치 사용을 위한 정보화 관련 지식 ○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 	
응시 자격 요건	자격증	<p>① ~ ② 모두 충족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 ②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<p>※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면허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상위자격증 포함</p>